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4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의원)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의심 가축의 살처분 등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등록 취소 등 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9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신설

(1)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방역업무 중 가축의 살처분,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안 제57조 및 안 제60조).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및 그 방역과 관련된 업(業)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이루어지는 소독·방제 외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을 법률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가축을 살처분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을 이동·해체·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며,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를 발굴·소멸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임.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살처분 대상 가축은 현행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므로 원활한 방역관리를 위해서는 그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살처분 대상 가축과 그 사체 등을 취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역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정의하고 그 등록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가축 사육시설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나 정확한 업체 현황이나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축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하고 등록제도와 방역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입장임.

(2) 가축폐기물처리업 정의 신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를 신설함에 있어 그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의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20조 및 제22조에서는 살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정안에서도 해당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조제9호나목에서 사용되는 ‘오염우려물품’은 현행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약칭되고 있는바,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안 제2조제9호나목에서 약칭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9호 각 호의 업무가 이러한 예방적인 살처분의 경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신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수사항과 등록취소·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8까지 신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안 제5조의5제1항의 등록·변경등록 제도와 안 제5조의5제2항의 휴업·휴업 후 영업재개 및 폐업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의 준수사항과 등록의 취소사유 및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살처분 등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참고로 안 제5조의7과 관련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 중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유는 안 제60조제3호의8, 제3호의9 및 제3호의10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도 해당되는 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과태료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게 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과의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나,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경우 가축방역위생관리업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8까지 계속해서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안 제5조의8의 조 제목에서 약칭하지 않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바, 안 제5조의5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를 “가축폐기물처리업자”로 약칭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5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를 “방역위생관리업자”로 약칭하고 있음.

둘째, 안 제5조의6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제한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한다면 이와 유사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역시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일정 범위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는바,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거나 거래관계의 안정성이 강조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동물의 생명을 다루고 불가역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가축 살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거래관계의 안정성도 강조될 것으로 생각됨.

셋째, 개정안은 안 제5조의7 각 호의 경우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제재처분 여부 및 수준(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을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와 관련하여, 단순한 영업 미개시 또는 미신고 휴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로서 규정하는 것은 그 제재의 수준이 과도할 수 있어 보이고,

제6호와 관련하여, 유사 업종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경우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요구·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행정청이 영업소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선택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로 정기점검의 거부·방해 또는 회피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제재 수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제8호와 관련하여, 유사 업종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고 영업한 자에게 제재처분으로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처분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검 신설

개정안은 신설하려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9 신설).

현행법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한 점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신설되는 가축폐기물처리업과 현행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검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조 제목 중 “영업자”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조 제목을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현행법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방역위생관리업자”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의9제1호에서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벌칙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60조).

개정안은 i)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미등록영업자와 부정등록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ii) 가축폐기물처리업의 휴업 등 미신고자, 등록취소 처분 등에 따르지 않은 자 및 준수사항 미준수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을 규정하며, iii)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미등록영업자 및 부정등록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업종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경우 미신고자 및 부정신고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은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고 그 사체를 취급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행정질서벌(과태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과태료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등을 취급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실효성 확보 수단 역시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